

의안번호	제2742호
의 결	2024. . . .
연 월 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허옥희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24. 1. 5.

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(허옥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4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. 5.

발 의 자 : 허옥희, 김향숙, 정영환,
이쌍자, 김원순, 김희태 의원
(6인)

1. 제안이유

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의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「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, 시행계획의 수립 등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 등(안 제5조~제9조)
- 라. 사업비의 지원(안 제10조)
- 마. 비밀 누설 금지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
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2호

- 예고기간: 2024. 1. 5.(금) ~ 2024. 1. 10.(수) [5일간]
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에 따라 고성군의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
2.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
3.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

사항

4.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·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5.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인 「고성군여성안전울타리」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군수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,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·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
제5조(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
3.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4. 여성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여성폭력피해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
5.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6. 「고성군여성안전울타리」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,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1. 고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고성군의원

2.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

3.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

4. 초·중·고등학교,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

5. 경찰, 검찰, 법원, 대한법률구조공단, 보호관찰소 등 경찰·사법 관련 기관

6.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「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여성폭력 대상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위하여 위원회 내 실무사례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위원회의 실무사례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사업비의 지원) 군수는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비밀 누설 금지)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

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여성폭력방지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여성폭력”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·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,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.
2. “여성폭력 피해자”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.
3. “2차 피해”란 여성폭력 피해자(이하 “피해자”라 한다)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수사·재판·보호·진료·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·신체적·경제적 피해
 - 나.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, 그 밖에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)
 - 다. 사용자(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,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)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
 - 1)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
 - 2)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 제한,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
 - 3) 전보, 전근,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치,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
 - 4)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
 - 5)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,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,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,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
 - 6)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,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, 그 밖에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
 - 7)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
 - 8) 인허가 등의 취소,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
 - 9)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,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,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